

소식

2019학년도 단체교섭 시작...상견례 가져

2019학년도 단체교섭 1차 전체회의가 10월 31일 오후 성산홀에서 진행됐다. 대학 측에서는 총장을 비롯해 사무처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총무부장, 기획예산부장 7인이, 노조 측은 위원장, 부위원장, 대의원의장, 기획부장, 이영민 대의원 5인이 사전 통보 명단대로 참석했다. 법인으로부터 위임된 대학 측의 대표권은 사무처장 및 기획처장으로 재위임됐다. 양 측은 서로 임단협안에 대한 기초설명을 마치고, 향후 회의방식 및 일정을 합의 공유했다. 통상적 방식인 실무소위원회 설치하여 진행하되, 소모적 논쟁은 지양하고 대학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본 17대 노동조합의 2019년 단체협상 추진의 기본 원칙은 지난해의 협약에서 퇴보하지 않는 결과를 도출하여 조합원 총회에서 승인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금협상안 등 세부내용에 대한 관련 사항은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2019년 하반기 신입조합원 연수회 진행



지난 25일 노동조합 및 지정 장소에서 재경·교육부 주관으로 2017년 이후 입학한 신입조합원들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신입조합원 연수'가 진행됐다. 13명 중 11명이 참가한 이번 연수에서는 노조에서 제작한 자료집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일반론 및 운영론, 규약으로 살핀 노동조합 운영체계에 대한 특강에 이어 집행부와 함께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교육 이후 장소를 옮겨 저녁식사와 더불어 친목도모를 통해 노조를 중심으로 조합원의 권익을 도모하자는 결의의 시간을 가지고 일정을 마쳤다. 차기 연수회는 의견수렴과 평가를 거쳐 내용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교육시간을 늘려 진행할 계획이다. 본 연수회 자료집은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정보

노동조합 조합원 현황_2019. 11. 1. 현재

조합원(A)	휴직조합원(B)	비고(A-B)
195	5	190

전월 활동 동향

일정	내용	비고
10. 2.	주간회의	집행부
10. 4.	노조회보 2019년 10월호 발간	포털 게시
10. 7.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10. 8.	2019 동문기업과 함께하는 취업박람회	위원장
10. 14.	한국노총 경산지역지부 대표자회의	위원장
10. 14.	2019학년도 임·단협안 및 교섭위원 통지	노동조합
10. 14.	기획위원회	기획부장
10. 16.	주간회의	집행부
10. 16.	대학기관인증평가 직원영역 면담	위원장
10. 22.	주간회의	집행부
10. 25.	신입조합원 연수	노동조합
10. 25.	조합원 피소에 대한 입장문 발표	위원장
10. 28.	인사위원회(서면회의): 포상 및 기타	위원장 등
10. 28.	주간회의	집행부
10. 29.	한국노총 위원장 순회 간담회 및 노동교실	위원장
10. 31.	2019학년도 임·단협 실시: 교섭위원 상견례	위원

11월 조합원 祝생일자_양력 기준/무순

강선구	권재순	김세영	김원환	김태동
김호엽	류정수	박주희	심경숙	여순자
이상남	이은실	이재주	이희돈	최문덕
최정환				

11월 주요 사업 계획

일정	내용	비고
11. 1.	노동조합 회보 발간(11월호)	홍보부
11. 9.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가을 단합 트레킹 대회	경주 무장산
11. 21.~22.	2019년 전국사립대연맹 정기 대의원대회	위원장, 부위원장
예정	조합원 설문조사: 각종 현안	조사통계부
예정	단체교섭 실시: 임금 및 단체 협상	위원
예정	노사협의회 실시	위원

오피니언

노동조합 배우기: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대학에는 전국사립대학교 노동조합연맹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이 있다. 올해 제17대 노동조합이 출범하여 195명이 조합원의 권익을 쟁취하기 위해 활동 중에 있다. 지난 25일에는 집행부와 신입 조합원들과의 교류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

한편, 필자를 포함하여 조합원 중 상당수는 노동조합에 대해 아직 생소하게 생각하거나, 다소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고향인 서양의 외국 사례를 배우면서 노동조합에 좀 더 다가가 보는 것은 어떨까?

노동자의 개념은 16세기 자본주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용되었다. 18~19세기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완성되면서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어 노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이 오늘 현대사회까지 이르고 있다. 우선 한국의 자본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국가인 미국에서 결성된 노동조합에 대해 살펴본다.

1950년대 미국에는 미국노동총연맹(AFL)과 산업별노동조합회의(CIO)로 크게 두 개의 노동조합이 있었다. 이후 1955년, 두 기관은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되면서 미국노동총연맹 산업별조합회의(AFL-CIO: American Federation of Labor and 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가 출범했다.

AFL-CIO에는 미 전역에서 약 56개 노동조합이 가입되어있고 백악관과 같이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있다. 근로자 업종으로는 항공조종사, 운송, 우편, 교원, 연방공무원, 연예인 노조 등 미국의 전반적인 산업 분야를 포함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자의 일자리, 건강, 은퇴, 가족, 무역, 교육, 임금, 이민 등 다양하다. 특히 미국 제조업의 많은 생산기지가 노동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한 만큼 국제 무역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 눈에여겨볼 만하다.

사실 초강대국 미국도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국가 중 하나이다. 최근 미국경제정책연구소(EPI)에서 미국 기업들의 최고경영자 임금과 근로자들의 임금을 비교해 발표한 적이 있었다. 1965년에는 임금차가 20배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300배 이상 난다는 보고였다. 보고서는 노동자들의 임금 정체현상과 노동조합의 가입률이 감소하는 현상도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쇠퇴가 소득 불평등 증가에 영향을 끼치고, 임금이 노동자가 아닌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몰리는 현상을 발견했다. 노동조합 역할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물론 기업 중심의 미국 노동조합과 우리대학 노동조합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역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노동조합이 쇠퇴하거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조합원의 권익을 충분히 지킬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 대학 노동조합도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조합원들의 단결로 필승의 역할을 다할 때 본부와의 협상에서 비로소 우리의 명예와 권리를 수호할 수 있다. <조합원>

할 일 많은 노동조합, 본연의 역할이란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로 용어 정의를 하고 있다. 노동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 유지 및 보장, 향상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를 다시 ‘유지 및 개선’한다고 했으니 반복적 문구가 읽힌다. 무엇보다 노동조합은 경제적 역할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표현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이다. 주지하듯 일차적인 이 경제적 역할은 고용안정, 임금, 복지개선으로 요약되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은 노사간의 항상적 쟁점이다.

현대의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 대공장체제가 확립되면서 부가된 역할이 ‘경영감시와 참여’다. 사용자의 방만·부실하거나 비윤리적 경영활동이 노동자의 생계·생활터전 사업장을 파산시킬 경우, 그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사실 기업의 경영이 우수할 경우 이익을 대부분 독점하는 것은 사용자이지만, 노동자 측에서는 임금의 향상을 둘째로 치더라도 고용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견인하여 국민경제를 유지하는 역할에 기여할 수 있다.

노조의 역할이 확장되면서 무엇보다 ‘인권적 역할’이 강조된다. 민주주의 시민사회 대부분을 구성하는 자본주의적 인간, 즉 노동력을 제공하는 임금노동자들이 비인격적 대우에 처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사회체제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인권 보호적 법률을 강화하고 있다. 노조는 당연히 조합원이 비인격적 대우, 각종 차별적 행위,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업무지시 등에 놓여 있다면 이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조합원의 건강과 안전 또한 마찬가지이고, 이로써 노조의 인권 보호 역할이 또한 기본적인 역할의 범주로 포함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우리 조합원이 최말단에서 지시와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도 결과적으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정책결정자도 업무지시자도, 판단자도 아닌 조합원은 일반적 통상적인 업무수행으로 고통에 처해질 줄도 몰랐었거니와 대학의 방관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학이 준 임무를 수행하고 홀로 감당해야 했던 고통과 그 내면의 불안함을 노조가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조합원들은 이야기했다. 노조는 그 조합원의 자존과 인격마저 무너지지 않도록 동반해야 한다. 노조의 인권적 역할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위원장>

게시판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가을 단합트레킹



- 행사일시: 2019. 11. 9.(토) 08:30 ~ 16:30
- 행사장소: 경주 무장산 일대
- 참가대상: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원
- 신청방법: 노동조합 사무국(정광국_교내☎ 6301)
포털메일로 부서(팀)별 신청
- 신청기한: 2019. 11. 4.(월)

제17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민원 신고 안내

본교에서 인권, 성희롱, 남녀차별, 괴롭힘, 갑질행위, 부당노동행위, 규정위반 등 불법적, 부당한 행위를 당하신 분이나 이를 목격하신 분은 노동조합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내 직제기구 및 규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자 하시는 분도 노동조합이 동반해 드립니다.

☎ 053_850_5760~1 📧 면담신청: 위원장, 부위원장, 여성부장

조합원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조합원과 공유하고자 하시는 정보, 오피니언 제언, 노조 및 학교 관련 정책, 직거래 및 물품 양도 등의 각종 의견을 주시면 매월 제작되는 본 회보에 반영됩니다. 직거래 장터 및 각종 물품 나눔 마당을 홈페이지에서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분은 관련 정보를 홍보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부장: 053_850_5534